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03,508,763	24,105,263
일반회계	569,864,025	17,095,921
특별회계	233,644,738	7,009,342
공기업특별회계	114,082,726	3,422,48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0,553,758	2,416,61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528,968	1,005,869
기타특별회계	119,562,012	3,586,86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867,289	896,019
주택사업특별회계	2,755,240	82,657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3,131,767	93,95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68,096	32,043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1,522,303	45,669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7,241,373	217,241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173,993	155,22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68,801,951	2,064,05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 1,971,52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4,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 된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